

##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부록 4-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CERTIFICATE OF ORIGIN

####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Peru FTA</b>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div style="text-align: center;">(Country)</div>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div style="text-align: center;">(Importing country)</div>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div style="text-align: center;">(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div>			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div style="text-align: center;">(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div>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 (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페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물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물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 IN BULK” (포장되지 않음)라고 적습니다. 물품의 품명 끝에는 “\*\*\*” (별 3개) 또는 “ W ” (사선) 을 더합니다.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물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sup>(1)</sup>
○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물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